

V [전국 의제 5]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1. 의제 개요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설치·운영지역에 대한 지원원칙과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인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부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관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이 느끼는 부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의제를 통해서 영구처분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어떠한 원칙과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국내·외 현황

2.1 국내 현황

관리 기본계획은 부지조사·선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유치지역 지원원칙과 내용 등도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치지역 지원원칙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은 부록 별첨자료인 관리 기본계획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15.6.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국내·외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들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문을 제출하였으며, 유치지역 지원방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4 >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시설(URL)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첫째,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을 지역에 두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 ➡ 둘째, 사용후핵연료 처분지원수수료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 ➡ 셋째,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여건을 고려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비용은 특별지원금으로 부담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 사례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국무총리 소속)는「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라 유치지역지원계획을 수립(2007.4.18)하고, 현재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 4. 유치지역지원계획(안)에 명시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특별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지원금(3,000억 원) 지원 ▶ 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 이전 ▶ 방사성폐기물 반입시 반입수수료 지원 ▶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분야 22개 사업 ▶ 지역혁신기반구축 분야 10개 사업 ▶ 친환경도시 육성 분야 23개 사업
장기검토사업	▶ 관계부처의 사업별 추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2.2 국외 현황³⁵⁾

해외의 관리시설 유치지역 관련 지원현황은 아래 표 5와 같습니다.

표 5. 해외 관리시설지역 지원현황

국가	지원 근거	주요 지원내용
일본	▶ 전원3법(19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단계) 연간 10억 엔(약 16억 원), 최대 20억 엔 (약 32억 원) ▶ (개요조사) 연간 20억 엔(약 32억 원), 최대 70억 엔 (약 113억 원)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주 행정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1979년) - 2차 (1990년) ▶ 고준위방폐물 처분위원회 권고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로 보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10년간 총액 3억 2천만 마르크 (약 845억 원) - (2차) 6년간 총액 9천만 마르크 (약 396억 원) ▶ 연방정부 - 주정부 협정 체결 권고

35. 「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현황」 일본 경제산업성, 참조

국가	지원 근거	주요 지원내용
미국	▶ 방사성폐기물 정책수정법 (198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지역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2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및 과세상당액의 총당 - 처분장 입지를 수용한 경우 특별자금 지원 * 부지특성조사, 건설 중 : 1,000만 달러(약 82억 원)/년 사용후핵연료 인수 시 : 2,000만 달러(일시금, 약 164억 원) 처분장 운영~폐쇄 : 2,000만 달러(약 164억 원)/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 (2006년) ▶ 발생자 경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지원을 위한 공익단체(GIP)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GIP 당 연간 최대 3,000만 유로(약 360억 원) 지원 ▶ 발생자에 의한 현지인 고용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업,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스웨덴	▶ 사업자-지자체 협력협정 (2009년)	▶ 2025년까지 20억 스웨덴 크로나(약 3,342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사업(처분장 입지 25%, 비입지 75%) - 교육, 비즈니스 개발, 인프라 등
캐나다	▶ 사업자 부지선정계획 (2010년) : 9개 단계의 부지선정절차	▶ (제4단계, 상세부지평가단계) 지역사회에 제공할 복지사업평가 (제6단계, 적합부지확인단계) 지역지원 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협정 체결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관련법령 (2016년 개정) ▶ 사업자-지자체 협력협정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지역 지자체에 고정자산세 상한치 인상 (일반시설 0.5~1.0% → 관리시설의 고정자산세 상한 3.1% 과세) ▶ 고령자 지원시설 투자, 본사 이전 등
영국	▶ 정책문서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선정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 1곳당 최대 연간 100만 파운드(약 15억 원) 지원 ▶ 적격 가능성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시추 조사단계까지 진행된 지자체에 최대 연간 250만 파운드(약 37억 원) 지원
스위스	▶ 지층처분장 프로젝트 특별계획	▶ 부지확정 후 교부금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명문화

* 원화 환산액은 국가별 지원근거 수립년도의 연평균환율을 적용함

3. 쟁점 및 고려 사항³⁶⁾

3.1 「유치지역 지원원칙」에 대한 의견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이주가능성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리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민 개인보다는 지역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책임은 현세대가 맡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미래세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지선정과정에서 관리시설 유치에 참여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부지선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지역에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2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의견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재단’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가칭)지역개발공사’와 같은 공공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공공법인의 역할은 장기간에 걸친 지역개발투자와 주민들이 원하는 중장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36.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 2020.3. p72~74

3.3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의 사례처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관리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이전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롯카쇼무라 시설³⁷⁾을 유치한 아오모리현 지역에 정책적으로 컨벤션 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7. 우라늄 농축(사용전핵연료), 재처리, 재처리를 통해 배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MOX 연료 제조 등을 담당